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2022.08.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 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된다)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를 말하며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전문학사, 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2022. 8. 18. 개정).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계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학생연구자 연구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

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6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인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 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쳐우, 졸업여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 구체적 역할 및 쳐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 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참여확인 체결) 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개발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 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인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인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10조(연구참여확인 변경)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인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인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인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2022. 8. 18. 개정).

제14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을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15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기준 마련, 균등 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2022. 8. 18. 삭제)

제17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인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2022. 8. 18. 개정).

② (2022. 8. 18. 삭제)

③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인서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는 등 학생연구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한다(2022. 8. 18. 개정).

④ (2022. 8. 18. 삭제)

⑤ (2022. 8. 18. 삭제)

제18조(학생인건비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체점검) 연구개발기관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의 부당 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2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보장)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화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감사실, 감사팀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인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인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명		학번		생년월일	
소속(학과명)		과정 및 학기	() 과정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 가. 연구참여 기간 : 20 ~ 20
- 나. 참여과제명 :
- 다. 담당업무(역할) :
- 라. 월 학생인건비 계상률 및 계상액(계상률 = 월계상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구분	학생인건비 계상액	합계(세금포함)
계상액	원	원
계상률	%	%

- 마.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 바.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 사. 연구책임자 정보

성명	
소속(학과명)	직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학약사항

-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인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라.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마.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침해하지 않는다.
- 바.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 사.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인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인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자.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화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장 : (서명 또는 인)